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96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김선교·구자근·김성원

김위상 • 송석준 • 박덕흠

최수진 · 김예지 · 서천호

윤상현 · 김상훈 · 신성범

강대식 의원(13인)

제안이유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전반적인 산업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 재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함(안 제10조).
- 바. 식자재유통업체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식자

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 등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자.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창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차.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 22조부터 제26조까지).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식자재유 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식자재유통 공동수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자재유통산업"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산지 생산자 등의 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식자재를 급식 및 외식업소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보관·포장·식품안전·배송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2. "식자재유통업체"란 급식 및 외식업소가 필요로 하는 일체의 식자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사업운영모델의 유형, 취급상품 및 시장의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되는 업체를 말한다.
- 3. "중소식자재유통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식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 4. "공동수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송·배송 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식자재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식자재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 2. 식자재유통산업에서의 식품안전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
 - 3. 식자재유통산업의 규모별 균형발전의 도모
 - 4. 식자재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 5. 식자재유통산업의 유통단계별 균형발전의 도모
 - 6.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7. 식자재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8. 식자재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의 조성
- 9.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자재유통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

-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 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2장 식자재유통산업발전계획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 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2. 식자재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 3. 식자재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 4. 식자재유통산업의 지역별·규모별·종류별·유통단계별 발전 방 안
 - 5. 지역별 유통 기능의 효율화 · 고도화 방안
 - 6.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 7.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8.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

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 9.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 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자재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 워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도지 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 2.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 3.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 4. 지역식자재유통기능의 효율화 · 고도화 방안
 - 5.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6. 그 밖에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식 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자재유통업체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

- 제10조(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일한 창구를 통해 일괄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서류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식자재유통업체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 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 허가・신고・등록
 - 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신고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영업 신고
 -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3조(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식자재유통업체 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식자재유통업체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식자재유통업체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 제14조(식자재유통업체의 휴업·폐업 신고) 식자재유통업체 개설자가 식자재유통업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와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 다.

제4장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5조(식자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

- 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분야별 진흥시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상생을 위 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2.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 원에 관한 사항
 -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7조(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물류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물류 대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중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이하 이 조에서 "중소식자재유통단체"라 한

- 다)으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라 한다) 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 2. 상품의 전시
-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 4.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③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 및 중소식자재유통업체 간 협력 및 상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의 구매, 물류 등 인프라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칭서비스 및 인수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제18조(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식자재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식자재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

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 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자 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제21조(식자재유통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 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1. 식자재유통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식자재유통업체를 경영하는 자는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 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 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 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

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③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 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 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 3. 제25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식자재유통산업 관계 공무원
 - 2.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3.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식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식자재유통물류기능의 효율화

- 제28조(식자재유통물류기능 효율화 시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식자재유통 물류표준화의 촉진
 - 2. 식자재유통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 3. 식자재유통 물류공동화의 촉진
 - 4. 식자재유통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 5. 식자재유통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 6. 식자재유통 수배송시설 및 공동수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 7. 그 밖에 식자재유통 물류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 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내외 식자재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 2. 식자재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 3. 식자재물류에 관한 기술협력 ·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 4. 그 밖에 식자재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9조(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 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이하 "공동수배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수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수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수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30조(식자재유통업체 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자재유통업체 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하여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 ·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보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10조·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취소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① 제10조에 따라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동부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장 벌칙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자재유통 업체를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 2. 제2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식자재유통업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2.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 니한 자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명령 또는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 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